

동북아 해양경찰 증강 동향

윤성순*

I. 서론

II. 국가별 해양경찰 현황

1. 한국 해양경찰청
2. 일본 해상보안청
3. 중국 해경국

III. 동북아 해양경비의 동향과 이슈

IV. 결론

* 해양정책연구실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 서론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들이 우리의 서해는 물론 남해와 동해까지 침입하여 조업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독도와 이어도 주변 해역에 각각 일본과 중국의 순시선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등 우리의 해양주권이 위협받는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불법조업 선박들의 격렬한 저항은 단속대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총격을 가하는 극단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한편 주권수호의 필요성을 더욱 굳건하게 공감시켜주기도 한다.

한·중·일은 지형학적으로 서로 이웃하면서 동북아의 해양공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국가들이기에 각 국가 간에 해양관할권과 영유권의 다툼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중 간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을 두고 서로 다른 원칙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불법조업 어선의 영해 침입과 불법어로 행위로 마찰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여전히 남아 있고, EEZ의 경계 및 대륙붕 개발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중·일 간에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북아의 연안 3국 간에는 해양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과의 갈등관계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최근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해양경비력 증강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해경국을 창설하고 세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본은 해양경비세력의 증강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영토적 측면의 가치만이 아니라 광물 및 수산자원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원 고갈의 위기가 팽배해 질수록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념을 주제로 대립하던 냉전시대에는 해군력을 기반으로 하는 힘의 경쟁이 주를 이루었지만, 냉전 이후에는 해양의 경제적 가치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조직의 세력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해양경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었다가 2017년에 다시 부활하면서 해양경비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국가 간 충돌 역제를 위해 강력한 해군력의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평상시의 주권침해 행위

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양경비력의 증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경비력은 유사 시에는 군사적 전력화가 가능하면서도 군사력에 비해 덜 민감하다는 이점도 있기에 해양경비력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연안국들은 해양경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동북아 해역에서도 해양경비력 증강의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비력의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경비 환경을 살펴보고, 각 국가 해양경비 조직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해양경비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II. 국가별 해양경찰 현황

1. 한국 해양경찰청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의 단속과 어업자원보호를 위해 1953년에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되었으며, 상공부 해무청 소속의 해양경비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내무부로 복귀하였다. 지금의 해양경찰청은 1991년에 만들어졌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던 1996년에 내무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었다.¹⁾ 그러나 2013년 세월호 사고의 대응 부실이라는 책임을 안고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축소되었다. 이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등의 정부기능 약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처방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상태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 2016년에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들의 고의적 충돌에 의해 침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양주권 침해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산시켰고 해양경찰청의 부활 여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문제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해양경찰청이 다시 부활하여 해체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함에 따라 해양경비의 조직적 여건이 강화되었다.

1)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검색일: 2017.12.4) 참조.

〈표 2-1〉 해양경찰청의 변화

소속 구분	내무부	상공부	내무부	내무부 (경찰청)	해양 수산부	국토 해양부	해양 수산부	국민 안전처	해양 수산부
기간	1953년~ 1955년	1955년~ 1962년	1962년~ 1991년	1991년~ 1996년	1996년~ 2007년	2008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7년	2017년~ 현재
조직명	해양 경찰대	해양 경비대	해양 경찰대	해양경찰청				해양경비 안전본부	해양 경찰청
권한	일반 사법권	특별 사법권	일반사법권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① 해상범죄의 예방, 해상치안정보의 수집, 해상 대간첩·대테러 작전 및 해적단속, 외국선박 단속 및 감시 등 사법경찰에 속하는 해양경찰사무, ② 해상수색 및 구조, 해상교통안전, 수상레저안전, 영해 및 접속수역 보호, EEZ 경비, 어로보호 등의 조직상의 해양경찰사무, ③ 오염방지활동, 여객 및 화물수송안전 확보, 유·도선의 안전관리 등의 타 행정부처에서 관장할 수 없는 사무, ④ 경비함정 및 항공기 운영, 해상집단행동 대응 등 해상에서의 공공의 질서를 위한 위험방지활동이 있다.²⁾

〈그림 2-1〉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주요 기능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기능 및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01.2)을 참조로 작성

2) 박성호·이윤철, “해양경비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2012.7), p.195.

해양경찰청이 임무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원은 다양한 크기의 함정과 항공기들이 있으며, 이 자원들은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함정들은 일반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과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특수정으로 구분된다. 해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은 총 184척이며,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은 35척,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은 110척이다. 함정의 규모별로 주요 경비해역이 연안, 내해, 광역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연안구역을 경비하는 소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333.3km², 근해구역을 경비하는 중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1,851.6km², 원해구역을 경비하는 대형함정 1척당 경비면적은 7,382km²에 이른다. 대형함정은 전체적인 작전 지휘임무를 수행하고 넓은 해역을 담당하므로 헬기를 탑재하기도 한다.³⁾

〈표 2-2〉 해양경찰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 현황

구분	동해	남해	서해	중부	제주	기타	계
함정	51	69	89	76	25	4	314
항공기	6	2	7	5	3	-	23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p.162-163.

서해에서의 중국 불법조업 선박의 주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7년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고 대응을 교훈삼아 ‘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양경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2. 일본 해상보안청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상 기뢰제거, 항로표지 및 시설 복구, 해난구조시설 정비, 불법 입국선박 감시 등의 해양안전과 해상치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1948년에 제정된 「해상보안청법」에 따라 운수성 산하에 설립된 조직이다.⁴⁾

「해상보안청법」제2조에서는 해상보안청의 주요 임무를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해상에서 선박의 항행 질서 유지, 해상에서 범죄예방 및 진압, 해상에서 범인의 수사 및 체포, 해상에서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해로 표식에 관한 사무, 기타 해상

3)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61.

4)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117.

안전 확보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르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상 안전 및 치안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관계기관 및 국외 해상보안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체제의 강화를 도모하면서 영해경비, 치안 확보, 해난구조, 해양환경의 보전, 자연재해 대응, 해양조사, 해양정보 수집·관리·제공, 선박교통안전 확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임무를 정하고 있다.⁵⁾

〈표 2-3〉 일본 해상보안청의 주요 임무

분야	주요 활동 내용
치안 확보	국내 불법어획 대책, 밀수 및 밀항 대책, 해적 대책, 해상분쟁 경비
관할해역 경비	관할해역 경계, 해양권의 보전, 의심선 및 공작선 대응,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해난 구조	해난사고의 대응, 해난 정보 수집·분석, 해양활동 안전 확보
해양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도 및 계몽 활동, 해상 환경사범 단속
해상 방재	유류·유해 위험물질 유출 및 배출 사고 대책, 지진 및 쓰나미 등 자연재해 대책
해양 조사	해도 작성, 해저 지형 및 지진화산 조사, 해류 관측 등
해상교통 안전확보	항내, 연안지역 등의 안전 대책과 항로표지시설의 관리
국제 연계 협력	해외 관련기관과 연계 협력사업 추진

자료 :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www.kaiho.mlit.go.jp/>)를 참고로 정리하여 저자 작성

일본 해상보안청(JCG)의 설치 목적, 임무, 담당업무 및 해상보안관의 신분, 직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연안경비대(Coast Guard)는 군대에 준하는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안청(JCG)의 경우도 유사시나 치안유지를 위해 내각총리대신의 출동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방위청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방위청장관의 지휘 아래에서도 행동 범위와 활동 권한은 평상시처럼 경비활동에 국한되는 자위대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독립조직이며, 그 장은 해상보안청 장관이다. 따라서 해상보안청 장관은 국토교통부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해상보안청의 중앙조직으로는 해상보안청 장관 아래 차장, 구난경비감이 있으며, 중앙본부의 행정조직은 교통부,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부 예하에 교육기관인 해상보안대학과 해상보안학교도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전국을 11관구로 나누어 해상보안본부를 두고 있으며 각 관구별 해상보안본부 예하에 해상보안부(감), 해상보안서가 있다.

5) 日本 海上保安庁, “海上保安体制強化に関する方針”, (2016.12), p.1.

2017년 4월 현재 총 인력 수는 13,744명이며, 주로 도쿄의 해상보안청 본청과 전국의 11개 관구해상보안본부에서 근무 중이다.⁶⁾ 해상보안청 직원은 90%이상이 해상보안관이며 해상보안관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져 있는 특별사법경찰직원으로,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준용되고 있으며, 경찰이나 자위대 등과 같이 계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일본은 매우 넓은 관할해역을 가졌기에 이를 경비하는 해상보안청의 활동범위도 매우 넓다. 이러한 광역해역을 경비하기 위한 해상보안청의 자원도 상당히 많다.

해상보안청은 총 455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시선과 순시정⁷⁾을 합친 경비함정은 369척이며,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은 62척이라고 알려져 있다.⁸⁾ 대형함정은 항공자산과 연계하여 광역경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관련 시설도 갖추고 있으며, 고속화·대형화 위주로 건조하고 있다. 항공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함정에 항공갑판과 격납고를 설치함으로써 광역해역에서 신속하게 현장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중형 함정과 소형 함정의 경우는 추진방식을 워트제트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함정의 속력을 증가시켜 기동력을 제고하고 있다.⁹⁾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리의 해양경찰청과 달리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측량선을 13척 보유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표 2-4〉 일본 해상보안청의 함정 세력 현황

구 분		종 류	톤 수	척 수
순시선	대 형	PLH-Type	3,500톤 이상	14
		PL-Type	1,000톤 이상	48
	중 형	PM-Type	350~500톤	38
		PS-Type	130~250톤	30
	소 방	FL-Type	250톤급	1
소 계			131척	
순시정	소형	PC-Type	50~100톤	69
		CL-Type	50톤 이하	169
	소 계			238척

6)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p.3-4.

7) 배수톤수가 약 200톤급 이상 경비정을 순시선이라 하고, 200톤급 미만을 순시정이라고 함(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120.

8)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6.

9)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p.131-135.

구 분	종 류	톤 수	척 수
특수 경비 구난정	방사능조사정	50톤 이하	3
	경비정	10톤 이하	2
	감시단속정	5톤 이하	58
	소 계	63척	
측량선	HL-Type	50톤급	5
	HS-Type	50톤 이하	8
	소 계	13척	
등대 순시선	LM-Type	50톤급	4
	LS-Type	17~26톤	3
	소 계	7척	
교육업무용선		15톤/1.5톤	3
합 계		455척	

자료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35.의 표를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6.를 참조하여 최신 정보로 수정

한편,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자산은 고정익 항공기 26대와 회전익 항공기 48대인데,¹⁰⁾ 고정익 항공기는 첨단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회전익 항공기는 함정과 의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수를 늘리고, 항속거리와 승선인원도 추가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¹¹⁾ 해상보안청이 경비하는 관할해역이 넓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 비해 항공기 세력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표 2-5〉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 세력 현황

구 분	특 성	기 종	대수(대)	속력(knot)	항속거리(NM)
고 정 익 (26대)	제트기 (4대)	GULF-V	2	510	6,500
		FALCON 900	2	500	4,170
	터보프롭 (22대)	SAAB 340	4	250	1,840
		BOMBAR 300	9	266	1,630
		BEECH 350	9	263	1,660
회 전 익 (회전익 항공기) (48대)	단거리 (48대)	AS 332	3	140	500
		S-76D	11	-	-
		BELL 412	5	-	497
		EC 225	5	175	500
		S-76C	3	155	607
		AW 139	18	167	503
		BELL 206B	3	130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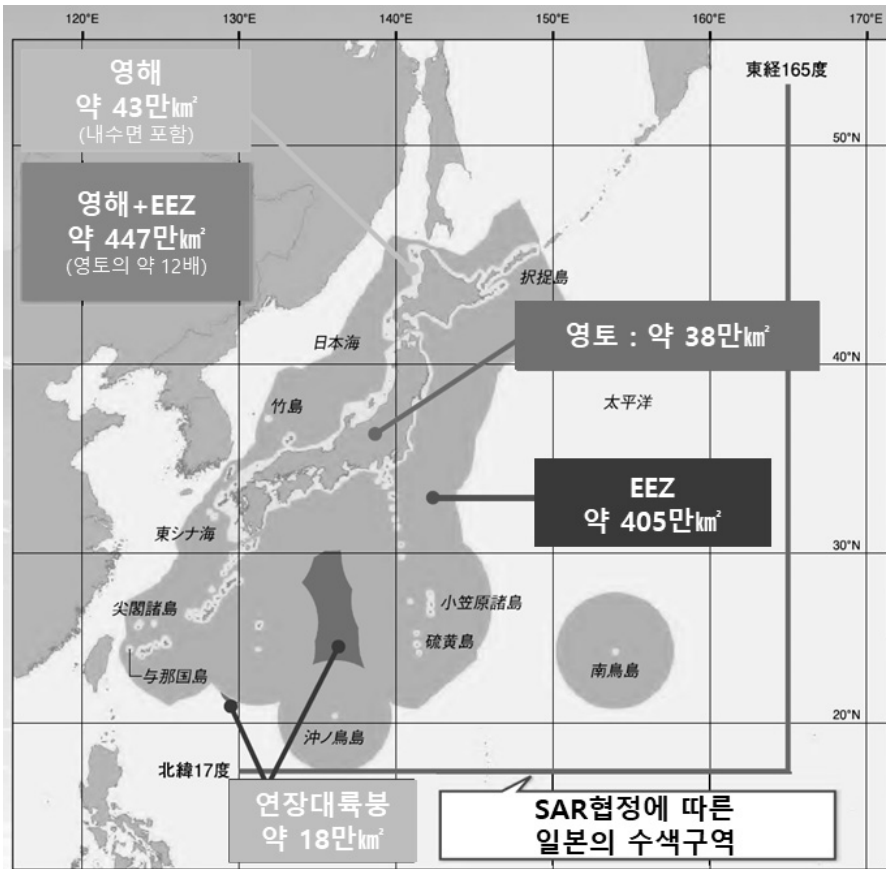
자료 :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 p.126의 표를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http://www.kaiho.mlit.go.jp/>)를 참조하여 저자가 2017년 현재 시점의 자료로 수정

10)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37.

11)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pp.136-137.

일본은 광활한 관할해역 면적을 가진 나라이다. 영해의 면적이 약 43만 km^2 이고 영해와 EEZ를 합한 수면의 면적은 약 447만 km^2 에 이른다.¹²⁾ 필리핀의 동측해역과 태평양의 중앙부 근처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EEZ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관할해역을 경비하는 해상보안청의 활동범위도 그만큼 넓다.

〈그림 2-2〉 일본이 주장하는 관할해역 범위



자료 :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1.

일본은 중국과의 사이에서 첨예한 영토분쟁 갈등을 겪고 있는데, 센카쿠열도(중국 명 다오위 다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분쟁은 동중국해의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어 있다. 때문에 중·일 양국은 자국의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만 동시에 해양경비 세력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2)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p.1.

이처럼 일본은 자국 해역 주변에서 중대한 사안 발생의 증가와 해상안전 및 치안확보와 관련한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해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6년 12월에 ‘해상안보체제 강화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아베 총리가 직접 주재한 이 회의를 통해 관련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서 일본 주변 해역의 안전 및 치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체제의 전략적 확충과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써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게 되었다.¹³⁾ 이 방침은 중국 해경국의 세력이 커지고 불법 조업선박의 출현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인데, 해양경비 장비의 확충과 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5개의 추진시책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시책은 ①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 경비체제 강화와 대규모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② 해양감시체제 강화 ③ 원전 등에 대한 테러대책 및 중요 사건 대응체제 강화 ④ 해양조사체제 강화 ⑤ 기반 정비로 구분된다.

센카쿠 제도 주변 영해에 대한 중국 측의 침범행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전담경비체제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중국 공선의 대형화·무장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순시선 정비를 추진하여 경비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비체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지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의 광대한 해역에서 외국 공선, 외국어선, 외국 해양조사선이나 테러 등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감시거점 정비를 통한 감시 능력 강화, 감시 정보의 집약,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통신체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위대와 역할분담을 위한 정보공유, 연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해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타국의 대륙붕 연장신청이나 중간선을 넘어선 해양경계 주장에 대하여 일본의 입장을 적절한 형태로 주장하기 위해 외교당국과 같은 국내 관련 기관과 협력 및 연계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해양조사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타국의 해양조사 동향이나 필요한 조사대상 해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해양조사체제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해상보안체제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증원, 교육훈련시설 확충 등을 인재 육성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13) 일본 해상보안청(<http://www.kaiho.mlit.go.jp/info/post-318.html>, 검색일: 2017.06.03).

〈표 2-6〉 일본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 주요 사업내용과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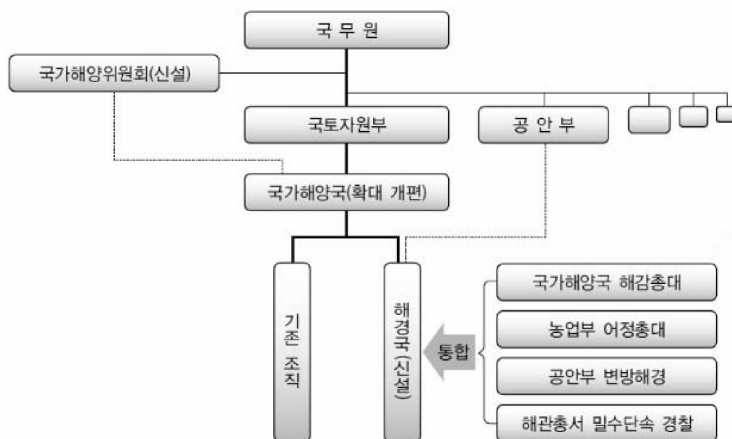
5개 주요 시책	주요 확충 자원	예산 (억 엔)
센카쿠영해 경비체제 강화 및 대규모사항의 동시발생에 대응 가능한 체제 정비	- 헬리콥터 탑재형 순시선 3척 - 대형순시선 2척	123.3
해양감시체제 강화	- 신형 제트기 1기 - 감시 거점 정비 - 영상전송기능 강화 - 비밀통신기능의 강화	41
원전 등 테러대처·중대사안 대응체제 강화	- 대형순시선 1척	29.7
해양조사체제 강화	- 기존 선박 고기능화 2척 - 자율형 해양관측장치 정비 - 대형측량선 1척	
기반정비	- 소형헬리콥터 1기 - 교육훈련시설 확충	4.7
계		198.7

자료 : 日本 海上保安庁 자료(平成29年度 海上保安庁関係 予算決定 概要, 2016.12) 참고

3. 중국 해경국

중국의 해양경비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수행되다가 2013년 해경국이 창설 되면서 통합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조직 개편을 통해 해역이용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의 해양권의 수호 분야에서의 법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자원부 소속에 해경국을 신설하였다.¹⁴⁾

〈그림 2-3〉 중국 해경국의 조직 위상



자료 : 최현호,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pn=1&num=111, 검색일: 2018.01.03).

14)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제 발전방안 연구』, (2017.8), p.145.

중국 해경국은 ① 해양범죄활동의 예방, 단속, 제지, 수사하여 국가 안전과 해상치안의 질서를 유지, 보호, ② 해양재난 구조 및 긴급조치 등 해양재난 대응을 통해 공공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 ③ 해역사용, 해양과학조사 등 해양관련 종합계획 수립 ④ 해양기능을 구분, 편성, 감독을 책임, ⑤ 무인도서와 해저지형의 명칭 관리, 영해기점 및 특수도서의 보호관리 방법 지정 및 감독, ⑥ 해양생태계 보호와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업무, ⑦ 해양산업 정책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와 제안, ⑧ 해양정책 관련 국제교류와의 협력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¹⁵⁾

중국은 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국력이 급팽창하였으며, 최근에는 G2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세계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국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겪으면서도 자국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해양관리기구를 재편하면서 해경국을 창설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 해역에서 영유권관련한 자국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관철시키려 할 것이 예상되며, 해양강국을 향한 기조 속에서 주변 당사국들과의 해양분쟁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⁶⁾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취임으로 시작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해양굴기(海洋掘起)'를 이루고자 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양굴기는 해상세력의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대양으로 나가기 위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자국의 해양영토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지화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분쟁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기존 패권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의 경쟁도 불사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산호초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군사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해당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경비력을 더욱 증강시키고 있다.¹⁷⁾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영토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며,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¹⁸⁾ 이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

15)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p.146.

16) 강신석, "2013년 중국 해양관리기구 조직개편의 함의",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3권 제2호(2013), p.26.

17)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2016), pp.169-171.

국들에게 영유권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개최되었던 제19차 공산당대회에서 해양강국 건설이 재차 강조되었으며, 앞으로 중국의 해양진출과 세력 확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으로의 세력 팽창을 서두르는 중국의 움직임에서 해경국의 창설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실전 배치를 넘어 핵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해경과 같은 해양경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국가 간 해양주도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실제 최근 중국 해경의 세력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영토관련 갈등이 첨예화됨에 따라 해경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을 대형화함으로써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실제 1,000톤급 이상의 함정들을 대거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해경함정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12,000톤급 2척은 물론 5,000톤급 4척을 현장에 배치하였다. 이들 함정은 해군의 퇴역함을 개조하여 미사일이나 어뢰와 같은 군사용 무기는 아니지만 함포와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함정의 작전 반경 역시 3,500km에 달하고 있어 세력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다.¹⁹⁾ 이와 같은 해경 함정의 대형화와 무장화는 중국 해경세력 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 중국의 세계 최대 해경함정 제원



- 만재 배수량 : 12,000톤
- 시속 26노트
- 76m 함포, 기관포 및 소구경포 무장
- 헬기 착륙장

자료 :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이 밖의 중국 해경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8) 연합뉴스, “중 시진핑 신년사, 영토주권·해양권의 결연히 수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31/0200000000AKR20161231051251083.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8.20).

19)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까지 함정을 200척까지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16년에 이미 220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²⁰⁾ 최근 3년간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²¹⁾

이와 같은 중국 해군의 급속한 세력 팽창은 중국이 겪고 있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해군에 준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공세적 대응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의 당사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해군 함정이나 경비함에 비해 월등히 커진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이제 미 해군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²²⁾

중국은 해경국 이외에도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라는 비공식적 해상무력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선이나 상선의 승조원이지만 필요에 따라 군사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다.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의 준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민병대의 주요 기지가 있고, 중국 정부에 의해 군사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

Ⅲ. 동북아 해양경비의 동향과 이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국가 간 해상세력 다툼이 긴장을 더해가면서 이제 동아시아 해역이 새로운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가는 듯하다. 여러 국가가 얽혀있는 복잡한 해양 영유권 및 관할권 갈등이 서로 한 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충돌 위험성도 큰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이 대립하고 전략적 목적에서 미국이 세력균형에 관여하고 있기에 동아시아 해역은 긴장과 갈등의 환경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최악의 군사적 충돌에 이를 수 있

20) 중국 超대新浪微博 (<http://lt.cjdbby.net/thread-2135876-1-2.html>, 검색일: 2017.01.23).

21) 중국 언론 기사(http://news.qq.com/a/20161215/012652.htm?t_t_t=0.6007218617530383, 검색일: 2017.0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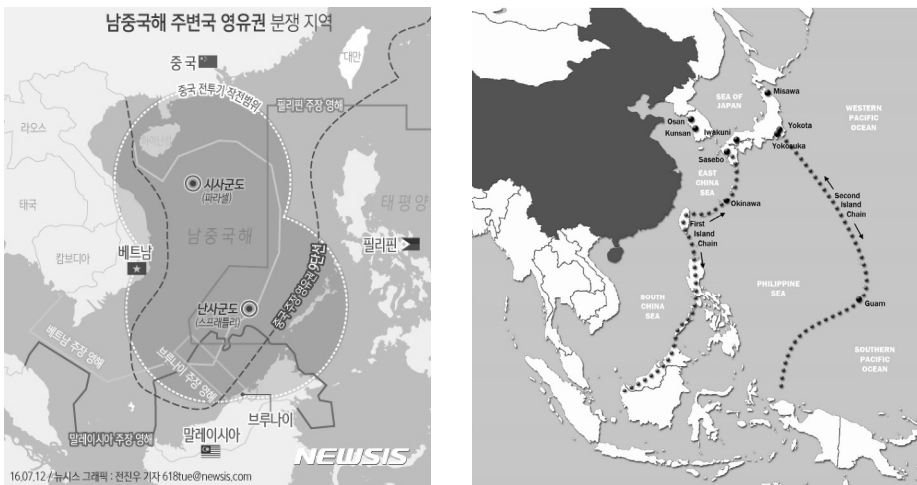
22)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23) 최현호,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pn=1&num=111, 검색일: 2018.01.03).

는 긴장과 대결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단도 하고 있다.²⁴⁾

특히, 중국의 국력이 G2의 반열에 오르고,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전략 및 ‘해양 굴기’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그 이전에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해양으로의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과 관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인 배경을 기초로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구단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국 방어진략으로 도련선(island chain)을 설정하고 있어 국제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지속적인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림 3-1〉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과 도련선



자료 : (좌) 뉴시스 2016.7.12.일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2_0014214391&clD=10101&plD=10100), (우) <https://cofda.wordpress.com/tag/second-island-chain/>, 검색일: 2018.01.08

이처럼 국력 신장과 함께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일본 역시 안보의 장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²⁵⁾ 중국에 G2 자리와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의 미일동맹을 통해 자국의 경제성장과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주었지만,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의 분쟁을 통해 최근의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주고 중국의 위협을 막아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느낀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세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⁶⁾

24)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제2호(2010), p.192.

25)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제2호(2010), p.192.

동북아 해역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위협과 긴장을 가져다준다. 해결되지 못한 해상경계문제가 서로 얽혀 있으며, 자원개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권의 엇갈린 주장과 자유로운 해양자원 이용 활동들이 상호 해양세력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우발적 상황으로 이어질 염려가 없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 상호 중첩된 EEZ에서의 불법적 어업행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은 이미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동북아 해양주권문제의 최대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불법조업은 외교적 해결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다소 폭력적이고 격렬한 저항으로 주권국의 단속세력에게 매우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단속대원들이 사망하거나 선박이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켜 상호 긴장관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유발한다.

〈그림 3-2〉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격렬한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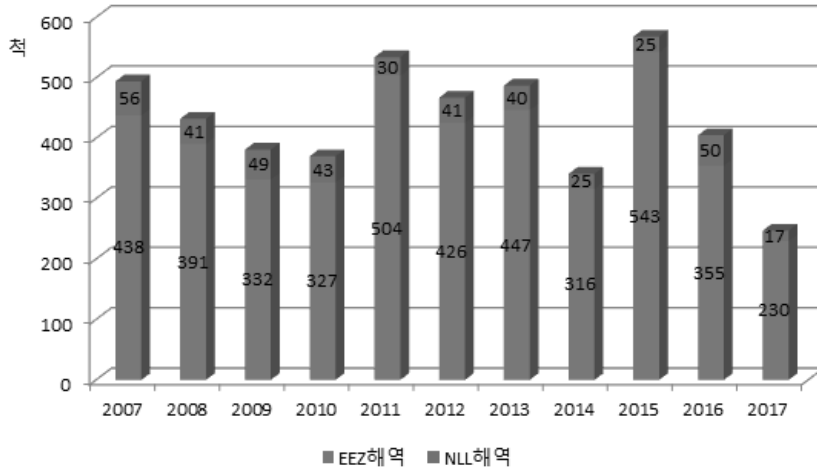
자료 : (좌) 격렬한 저항(동아일보 2011.11.17.일 기사(<http://news.donga.com/View?gid=41936910&date=20111117>), (우) 단속을 위한 공용화기 사용(YTN 2017.12.20.일 기사(http://www.ytn.co.kr/_ln/0115_201712201822466047_001))

중국의 경제 성장, 고령화율 증가, 교육수준 향상이 수산물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수산물 수요 증가는 동북아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²⁷⁾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불법조업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6) 김석수, “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안보”, 『일본연구』 제67호(2016.3), p.27.

27) 오상진·최경훈·박계각, “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3집 제3호(2017.9),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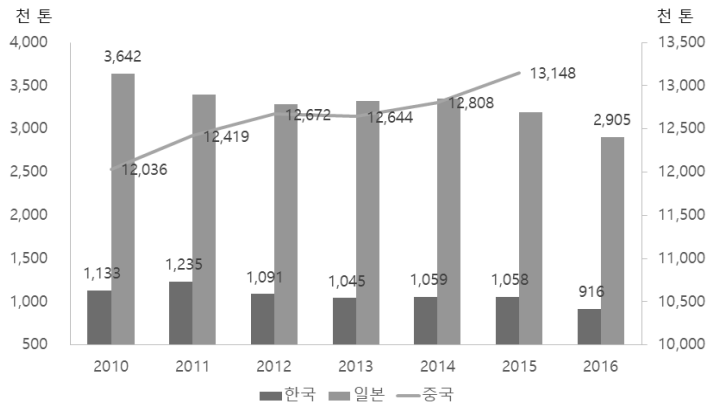
〈그림 3-3〉 중국어선 단속 현황



자료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2, 2017.12.26. 검색)

이와 같은 중국의 불법조업과 남획으로 동북아 해역의 어업생산량 추세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중국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국가별 연근해어업 생산량 변화는 동북아 해역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자국 내 수산물 수요나 자원확보 정책의 변화에 기인하기보다 경쟁적으로 선점에 따른 상대적 어획량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 관할권 내의 수산자원을 지키는 것이 최근 동북아에서의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림 3-4〉 한·중·일 연근해 어업생산량 변화 추이



자료 : 연합뉴스, “한일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05/09/0802010000AKR20170509061500051.HTML>, 검색일: 2017.09.06)

한·일 간의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른 대륙붕자원의 공동개발 협력이 지지부진하고, 2028년까지의 협정기간 만료가 임박해짐에 따라 자원탐사활동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제7광구의 영유권에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당시와 달리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사건을 계기로 지형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영유권을 설정하는 분위기 변화에 따라 협정 만료 이후 제7광구가 일본 수역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 구역은 엄청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중국도 기존의 관망자세가 아니라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서서히 공세를 더해 가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8년 협정 만료가 임박해질수록 한·중·일 각 국가들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는 물론 국제법 분쟁에서의 유리한 논리 개발이 점차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5〉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을 둘러싼 경계 주장



자료 : 머니투데이(<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421503511520>, 검색일: 2017.12.26)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 획정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양국의 현안으로 진행 중에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 이후 2008년까지 한·중 간의 국장급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부터 협상이 재가동되었다. 2015년 12월의 제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이어 2016년 4월과 12월에 회담이 있었고 2017년

8월에 제4차 회담을 진행하였다. 한·중 간의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 중에 있는데, 매년 지속적인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하면서 양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동북아 해역에서 한·중·일 3국의 해양관할권 갈등은 군사적 대립보다 억제력 확보를 위한 해양경비 세력의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 갈등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이 한창이며, 이와 함께 해경의 세력 증강을 통해 해군과 해경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사시 해군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경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경의 직무를 해군함정과 동일하게 함장, 기관장, 항해병, 레이더병, 신호병 등의 8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경함정을 배치하는 등의 세력화를 통해 심리적 억제력 강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확장에 대응한 상대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국제해양법(UNCLOS) 발효 이전까지는 동북아 해양세력을 일본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후 중·일 모두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를 거쳐, 현재는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세력 증강은 평화헌법의 범위 내에서 해군력 증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며, 자국의 광활한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해 현대화·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해양경비세력 확장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해양세력을 확대하고 있다.²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하여 자국의 해군력과 해양경찰력을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연안국가들은 자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경찰(Coast Guard)을 조직하여 보유하고 있다. 각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직 특성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집중형이라 할 수 있고, 중국은 해경국 신설에 따라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변화되었다.²⁹⁾

28)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필리핀의 해양경비력 증강을 지원하고 남중국해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에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연합뉴스 2013.7.27. 일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7/0619000000AKR20130727044100073.HTML>, 검색일: 2017.12.5), 추가로 방위장비도 제공하기로 함(경향신문 2015.11.20. 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01155071&code=970203, 검색일:2017.12.5).

29) 193개국 가운데 131개국이 Coast Guard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형, 집중형, 경찰형으로 조직 특성을 구분할 수 있음. 해군형이 75개, 집중형 63개, 경찰형 34개 국가로 조사됨(양희철, “해상갈등의

동북아 3국의 해양경찰조직은 해양경비, 해양치안, 구조구난 등의 공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국가별 해경의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군과 더불어 해양안보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본처럼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형태와 일부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연안국가들은 해양법집행세력으로서의 해양경찰 세력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중요한 자산으로 키워가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같이 해양관할권 분쟁이 첨예한 지역에서의 해양경찰 세력은 자국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필수자산으로 인식되어 더욱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韓·中·日·美의 해양법집행체제 비교

구분	해양안보	해상치안	해양안전·구조	해양환경	해양자원보호
한국	해군·해경	해경	해경·해수부	해경·해수부	해경·해수부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수상경찰청	해상보안청	해양보안청	해상보안청
중국	해군·해경	해경국	해경국	해경국	해경국
미국	해군·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Coast Guard

자료 :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IV. 결론

해양경찰청은 조직의 부활과 함께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중·일의 해결되지 않은 영유권과 관할권 갈등이 지속되고, 중국과 일본의 해경세력 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 안정화와 증강이 시급하다.

동북아 해양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찰은 이미 준군사 조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해군력에 버금가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다. 군사력의 충돌이라는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 해양경찰력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유사시 해양경찰의 해군 전력화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해양경찰의 세력 증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해양경찰청이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놓여있다.

첫째, 해양경찰청의 조직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세계의 해양법집행세력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의 해양경찰청은 ‘경찰

점증적 제고와 우리나라 해양법집행세력 운용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 발표자료 (2017.4) 참조.

(Police)과 ‘경비대(Guard)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할 수 있다. 즉 해양주권 수호라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해양경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적정 세력의 증강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 및 주권 수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는 기본적 임무이다.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주변 위협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적정 해양경비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경비력 증강을 위한 장기전략과 치밀한 계획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해양경찰청이 해체될 무렵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바다, 우리의 자원을 지키는 핵심 세력으로 인정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신뢰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한 때 강력한 해양법집행세력으로서 중국의 해경국 창설의 모델이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이 해군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핵심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다면 우리의 해양주권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석. “2013년 중국 해양관리기구 조직개편의 함의,”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3권 제2호, (2013).
- 김석수. “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안보,” 『일본연구』 제67호, (2016.3)
- 박성호·이윤철. “해양경비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의 기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2012.7).
- 안득기, “중국과 일본의 상호의존과 경쟁,” 『동서연구』, 제22권제2호, (2010).
- 양희철, “해상갈등의 점증적 제고와 우리나라 해양법집행세력 운용방향,” 해양환경안전학회 발표자료 (2017.4).
- 오상진·최경훈·박계각. “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3집 제3호, (2017.9)
-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24집 4호, (2016).
- 최현호. “중국 해상무력의 새로운 축...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 월간 국방과 기술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pn=1&num=111, (검색일: 2018.01.03.)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8).
- 해양경찰청. 『선진 치안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선진화 연구』 (2013.11)
- 日本 海上保安庁, “海上保安体制強化に関する方針”, (2016.12).
- 日本 海上保安庁パンフレット, (2017.3).
- 경향신문. 2015.11.20. 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201155071&code=970203, (검색일:2017.12.5.).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81421503511520> (검색일: 2017.12.26.)
- 아시아경제. “중 남중국해 지배위해 초대형 해경경비함 도입 박차”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710265480545> (검색일: 2017.09.11.)
- 연합뉴스. “중 시진핑 신년사, 영토주권·해양권의 결연히 수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31/0200000000AKR20161231051251083.HTML?input=1195m> (검색일: 2017.08.20.)
- 연합뉴스. “한일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7/>

05/09/0802010000AKR20170509061500051.HTM (검색일: 2017.09.06).
연합뉴스. 2013.7.27.일자,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7/27/0619000000AKR20130727044100073.HTML> (검색일: 2017.12.5.)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http://www.kaiho.mlit.go.jp>.
중국 超大新浪微博. (<http://lt.cjdbby.net/thread-2135876-1-2.html>, 검색일: 2017.01.23.)
중국 언론 기사. (http://news.qq.com/a/20161215/012652.htm?_t_t_t=0.6007218617530383, 검색일: 2017.01.23.)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kcg/intro/history> (검색일: 2017.12.4.)

Abstract

Strengthening Trend of Coast Guards in Northeast Asia

Yoon, Sungsoon*

Recent marin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have come to us as a great threat. China, which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hina Coast Guard and has rapidly developed maritime security forces, is trying to overcome the various conflict countries with its power. Japan is also strengthening intensively its maritime security forces. Since Korea, China, and Japan are geographically neighboring and sharing maritime space in Northeast Asia,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maritime jurisdiction and territorial rights among the countries. The struggle for initiative in the ocean is fierce among the three coastal nations in Northeast Asia. therefore, Korea needs more thorough preparation and response to protect the marine sovereignty.

As the superpowers of China and Japan are confronted and the United States is involved in the balance of power in strategic purposes, the East Asian sea area is a place where tension and conflict environment exist. China's illegal fishing boats are constantly invading our waters, and they even threaten the lives of our police officers. The issue of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yet to be solved, and is underway in both countri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continental shelf resources may collide as the agreement on the continental shelf will expire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conflicts i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the three coun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are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ecurity forces to secure deterrence rather tha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situation where the unresolved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conflicts of Korea, China and Japan continue, and the competition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powers of China and Japan becomes fierce, there is a urgent need for stabilization and enhancement of the maritime forces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 Director, Marine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establish a new long-term strategy for enhancing the maritime security force and to carry out it.

It is expected that the Korean Coast Guard, which once said that it was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China's Coast Guard as a powerful force for the enforcement of the maritime law, firmly establishes itself as a key force to protect our oceans with the Navy and keeps our maritime sovereignty firmly.

Key Words: Marine Sovereignty, Coast Guard, Maritime Security Power

논문접수 :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 : 2018년 5월 18일 | 게재확정 : 2018년 5월 23일